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이 병 두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액을 이에 맞게 개정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를 시·도위원의 경우 현행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둘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의원의 국내·외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